



안전보건관리규정

사규 제03-014호(2)
2005년 5월 1일 제정
사규운용부서장: 업무부 부서장

개정(1) 2020년 11월 10일

개정(2) 2022년 6월 1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전면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동성금속(주)(이하 ‘회사’라 한다)의 임직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정립하여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업무능률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1. 이 규정은 회사의 사업장에 근무하는 임·직원 및 사내 도급 사업 근로자에게 적용한다.
2. 회사의 안전 보건 관리 업무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 및 다른 사규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산

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재해”란 사고로 인하여 인명이나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것을 말하며, 특히 산업 재해란 임직원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사고”란 회사의 귀책 유무를 불문하고 인명 피해와 재산의 손실, 운영에 지장이 초래된 것을 말한다.
3. “안전관리”란 사고의 원인이 되는 불안정한 상태나 조건 또는 활동을 사전에 발견하여 이를 시정 또는 제거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며, 또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이로 인한 피해를 극소화하기 위한 조치와 활동을 말한다.
4. “보건관리”란 직원의 건강 유지 증진을 도모하고 근무 의욕 고취를 위하여 직원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저해 요인을 제거하여 건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5. “중대재해”란 산업 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를 말한다.
6. “도급”이란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
7. “도급인”이란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하는 사업주를 말한다. 다만, 건설 공사 발주자는 제외한다.
8. “수급인”이란 도급인으로부터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받은 사업주를 말한다.
9. “관계수급인”이란 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에 각 단계별로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를 말한다.
10. “건설공사발주자”란 건설 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 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지 않는 자를 말한다. 다만,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
11. “관리감독자”란 회사의 직제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와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자로서 부서장, 조·반장 이상의 관리자 등을 말한다.
12. “관계법령”이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제정 공포된 시행령, 규칙 등 관련 법령을 말한다.
13. “근로자대표”란 회사의 단체협약에 따른 교섭대표 노동조합의 대표를 말한다.
14. “주관부서”란 안전·보건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여부를 모니터링하는 본사 안전부서를 말한다.

15. “소관부서”란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관리 사항을 관장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4조 (안전 보건 방침)

1. 대표이사는 회사에 적합한 안전 보건 방침을 정하여야 하며, 이 방침에서는 안전 보건에 관한 사업주의 경영 방침과 목표, 성과 개선에 대한 의지가 분명히 제시되어야 하고 모든 구성원에 공표되어야 한다.
2. 안전 보건 방침은 간결하게 문서화하고 사업주의 서명과 시행일을 표기하여 회사 내 모든 구성원 및 이해 관계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3. 사업주는 안전 보건 정책이 사회적 흐름이나 회사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검토·수정하여야 한다.

제5조 (재해 예방 의무)

이 규정의 목적과 효율적인 안전 보건 업무 수행을 위한 재해 예방 의무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회사

- (1) 이 규정과 이 규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하는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준수
- (2) 회사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
- (3) 근로 조건을 개선하여 적절한 작업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건강 장애를 예방함과 동시에 근로자의 생명을 지키고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
- (4) 국가의 산업 재해 예방 시책에 따를 것
- (5) 지속적으로 회사의 유해·위험 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개선하고 필요한 조치(위험성 평가 수행) 이행

2. 생산부서(장)

- (1) 경영 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근로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관리자는 해당 직무와 관련된 안전 보건상의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 (2) 생산 활동이나 작업 내용 등에 따른 제반 사항에 대하여 유해·위험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이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수행한다.

3. 안전보건부서(장)

- (1) 안전 보건 관리 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를 지도·조언
- (2) 위험성 평가 수행 사항 관리 등 안전 보건 활동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역할 수

행

4. 근로자

- (1)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준수
- (2) 사업주나 그 밖의 관련 단체에서 실시하는 산업 재해 예방에 관한 조치 사항 준수

제6조 (안전 보건 관리 조직)

회사의 안전 보건 관리 조직은 별표1과 같다.

제7조 (안전 보건 관리 책임자)

1. 회사의 안전 보건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안전 보건 관리 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
2. 제1항의 관리책임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 (1). 산업 재해 예방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2). 안전 보건 관리 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3). 안전 보건 교육에 관한 사항
 - (4). 작업 환경 측정 등 작업 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5). 임직원의 건강 진단 등 건강 관리에 관한 사항
 - (6). 산업 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 (7). 산업 재해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 (8). 안전 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 (9). 안전 관리 목표 설정 및 유해 위험 예방 조치에 관한 사항
 - (10). 안전 보건 관리 예산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 (11). 위험성 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과 안전 보건 규칙에서 정하는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 장애의 방지에 관한 사항

3. 관리책임자는 제9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와 제10조에 따른 보건관리자를 지휘·감독한다.

제8조 (관리감독자)

1. 관리감독자는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1) 소관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 (2) 소속 직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 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 (3) 산업 재해에 관한보고, 이에 대한 응급 조치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 시행
 - (4)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감독
 - (5)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

- (6) 위험성 평가를 위한 유해·위험 요인의 파악에 대한 참여
 - (7) 위험성 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 조치의 시행에 대한 참여
 - (8) 그 밖에 해당 작업의 안전 및 보건에 대하여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사항
2. 회사는 관리감독자에게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고, 해당 업무에 필요한 시설, 장비 및 예산 등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9조 (안전관리자)

1. 회사는 제7조 제2항 각호의 사항 중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안전관리자를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의거 선임된 안전관리자의 직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업무
 - (2) 위험성 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 (3) 안전 인증 대상 기계 및 자율 안전 인증 대상 기계 등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 (4) 해당 사업장 안전 교육 계획의 수립 및 안전 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 (5) 사업장 순회 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 (6) 산업 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조언
 - (7) 산업 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조언
 - (8)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안전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 (9) 업무 수행 내용의 보고서 작성 등 기록·유지
 - (10) 그 밖에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관계 법령이 정하는 사항
3. 회사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기일 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보건관리자)

1. 회사는 제7조 제2항 각호의 사항 중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보건관리자를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의거 선임된 보건관리자의 직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업무

- (2) 안전 인증 대상 기계 등과 자율 안전 확인 대상 기계 등 중 보건과 관련된 보호구(保護具)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 (3) 위험성 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 (4) 물질 안전 보건 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 (5) 해당 사업장 보건 교육 계획의 수립 및 보건 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 (6) 작업장 내에서 사용되는 전체 환기 장치 및 국소 배기 장치 등에 관한 설비의 점검과 작업 방법의 공학적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 (7) 사업장 순회 점검·지도 및 조치의 건의
- (8) 산업 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조언
- (9) 산업 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조언
- (10)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보건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 (11) 업무 수행 내용의 보고서 작성 등 기록·유지
- (12) 그 밖에 보건과 관련된 작업 관리 및 작업 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관계 법령이 정하는 사항

3. 회사는 보건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기일 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산업보건의)

1. 회사는 직원의 건강 관리나 그 밖의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지도하기 위하여 산업보건의를 두어야 한다. 다만,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보건의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
2. 산업보건의의 직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 (1) 건강 진단 결과의 검토 및 그 결과에 따른 작업 배치, 작업 전환 또는 근로 시간의 단축 등 직원의 건강 보호 조치
 - (2) 직원의 건강 장애의 원인 조사와 재발 방지를 위한 의학적 조치
 - (3) 그 밖에 직원의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의학적 조치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12조 (명예산업안전감독관)

1.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하 ‘명예감독관’이라 한다)은 근로자 대표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추천하는 자로 고용노동부 지방노동관서에 위촉을 추천할 수 있다.
2. 명예감독관의 직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 (1) 사업장에서 하는 자체 점검 참여 및 “근로기준법” 제101조에 따른 근로감독관(이하 “근로감독관”이라 한다.)이 하는 사업장 감독 참여
 - (2) 사업장 산업 재해 예방 계획 수립 참여 및 사업장에서 하는 기계·기구 자체 검사 참석
 - (3) 산업 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 중지 요청
 - (4) 작업 환경 측정, 직원 건강 진단 시의 참석 및 그 결과에 대한 설명회 참여
 - (5) 직업성 질환의 증상이 있거나 질병에 걸린 직원이 여러 명 발생한 경우 임시 건강 진단 실시 요청
 - (6) 직원에 대한 안전 수칙 준수 지도
 - (7) 법령 및 산업 재해 예방 정책 개선 건의
 - (8) 안전·보건 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활동 등에 대한 참여와 지원
 - (9) 그 밖에 산업 재해 예방에 대한 홍보 등 산업 재해 예방 업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3. 회사는 명예감독관으로서 정당한 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그 명예감독관에 대하여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3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제13조 (위원회구성)

1. 회사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11명 내외의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2. 위원회의 근로자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구성한다.
 - (1) 근로자대표
 - (2)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1명 이상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 (3)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9명(제2호의 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9명에서 그 위원의 수를 제외한 수를 말한다) 이내의 해당 사업장의 직원
3. 위원회의 사용자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구성한다.
 - (1) 관리책임자
 - (2) 안전관리자 1명

- (3) 보건관리자 1명
 - (4) 관리책임자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부서장 이상
4. 간사는 사용자측, 근로자측 각 1인으로 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한다.

제14조 (운영 등)

1. 위원회의 위원장은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 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하되, 정기 회의는 분기마다 산업안전보건 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3. 위원회는 제15조에서 정한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4. 위원회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는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 중에서 1명을 지정하여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6. 회사는 위원회에서 의결하지 못하였거나, 의결된 사항의 해석 또는 이행 방법 등에 관하여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의 합의에 따라 위원회에 중재 기구를 두어 해결하거나 제3자에 의한 중재를 받기로 한다.
7. 중재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며 위원회는 그 결정에 따라야 한다.
8.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내용 등 회의 결과와 중재 결정된 내용 등을 사내 인트라넷, 게시판 게시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원에게 신속히 알려주어야 한다. 회사는 근로자의 건강 관리나 그 밖의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지도하기 위하여 산업보건의를 선임하거나 외부에서 위촉할 수 있다.

제15조 (심의·의결 사항)

1. 위원회가 심의·의결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제7조 제2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관한 사항
 - (2) 제7조 제2항 제6호에 따른 사항 중 중대 재해 사고에 대한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 (3) 안전 보건에 관한 주요 시책의 심의
 - (4) 기타 안전 보건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부의하는 안건

제4장 안전·보건교육

제16조 (안전 보건 교육)

1. 회사는 소속 직원에게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 보건 교육을 하여야 한다.
2. 회사는 직원을 채용할 때와 작업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직원에게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 보건 교육을 하여야 한다.
3. 회사는 직원을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안전 보건 교육 외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 보건 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한다.

제17조 (교육계획 수립)

1. 주관부서장은 매년 연간 교육 계획을 작성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는 매년 교육 계획의 수립, 시행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소관부서장은 주관 부서의 안전·보건교육 계획을 이행하여야 하며 필요시 부서 여건에 적합한 교육 계획을 별도 실시할 수 있다.

제18조 (교육의 구분)

1. 안전 보건 교육은 정기교육, 채용 시 교육, 작업 내용 변경 시 교육, 특별 교육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교육 대상 및 내용은 관계 법령이 정한 바에 따른다.
2. 직무 교육은 관리책임자 및 안전·보건관리자에게 실시하며, 신규 교육과 보수 교육으로 구분한다.
3. 직무 교육은 해당 직위에 선임된 후 3개월 이내에 직무 수행에 필요한 신규 교육을 받아야 하며, 신규 교육을 이수한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에 보수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19조 (교육 실시 방법)

1.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보건교육은 관리감독자가 주관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안전·보건관리자 및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전문 교육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2. 관리감독자 안전 보건 교육은 전문 교육 기관에 위탁하는 교육으로 실시한다.

제20조 (교육 관계 서류 보존)

1. 관리감독자는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의 안전 보건 교육 결과 서류(교육 일지, 서명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2. 회사는 교육 관계 서류를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제5장 작업장 보건관리

제21조 (안전 보건 관리 계획 수립)

1. 회사는 임직원과 안전보건관리 대상 사업·시설의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를 위하여 매년 12월말까지 다음 연도 안전 보건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안전 보건 관리 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안전 보건에 관한 경영 방침
 - (2) 안전 보건 관리 조직의 구성·인원 및 역할
 - (3) 안전 보건 관련 예산 및 시설 현황
 - (4) 안전 보건에 관한 전년도 활동 실적 및 다음 연도 활동 계획
 - (5) 그 밖의 안전 보건 관리에 관한 사항
3. 주관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 보건 관리 계획을 전 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소관부서장은 사업장 여건에 맞는 계획을 별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4.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소관 사업장 안전 보건 관리 계획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이행 상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22조 (사업주의 의무)

1. 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직원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증진시키고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 정책을 따라야 한다.
 - (1)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 (2) 직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 환경의 조성 및 근로 조건 개선
 - (3)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직원에게 제공

2. 회사는 건설물을 발주·설계 및 건설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을 지켜야 하고, 그 발주 공사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산업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3조 (직원의 의무)

직원은 관계 법령 및 이 규정에서 정하는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며 각종 안전 사고 예방에도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 (도급 사업 산업 재해 예방조치)

1. 회사는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산업 재해 예방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 회사와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 (2) 작업장 순회 점검
- (3) 관계 수급인이 관계 수급인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 교육에 대한 실시 확인
- (4) 화재·폭발, 토사·구축물 등 붕괴 등에 대비한 경보 체계 운영과 대피 방법 훈련
- (5) 위생 시설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의 제공 또는 사업장 내 위생 시설 이용의 협조
- (6) 관계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 보건 교육의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지원
- (7) 같은 장소에서 관계 수급인 등의 작업 시기·내용, 안전 조치 및 보건 조치 등의 확인
- (8) 제7호의 확인 결과 관계 수급인 등의 작업 혼재로 인하여 화재·폭발 등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계 수급인 등의 작업 시기·내용 등의 조정
- (9) 도급 사업 합동 안전·보건 점검

2. 회사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 직원 및 관계 수급인 근로자와 함께 정기적 또는 수시로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합동 점검을 하여야 한다.

제25조 (안전·보건 조치)

1. 회사는 다음 각호의 위험으로 인한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 기계, 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 (2)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 (3)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
- (4) 굴착·운반·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 방법 등에 의한 위험

2. 회사는 직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작업 및 점검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 (2)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 (3)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 (4)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3.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 장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건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 원재료·가스·증기·분진·산소결핍·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 장애
- (2) 방사선·유해광선·고온·저온·초음파·소음·진동·이상기압 등에 의한 건강 장애
- (3)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액체 또는 찌꺼기 등에 의한 건강 장애
- (4) 계측감시(計測監視), 컴퓨터 단말기 조작, 정밀공작(精密工作) 등의 작업에 의한 건강 장애
- (5) 단순 반복 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 장애
- (6) 환기·채광·조명·보온·방습·청결 등의 적정 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건강 장애

4. 제3항에 따라 회사가 하여야 하는 보건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른다.

5. 회사는 건설, 물품, 용역 계약에 따른 관계 수급인 근로자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안전 보건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5조의 2 (안전 보건 총괄책임자)

1. 회사는 관계 수급인 근로자가 회사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안전 보건 관리책임자를 회사의 근로자와 관계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 보건 총괄책임자로 지정한다.

2. 안전 보건 총괄책임자 지정 대상 사업과 직무 등은 관계 법령에 따른다.

제26조 (사업주의 작업 중지)

1. 회사는 산업 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해당 직원을 작업 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당해 작업의 관리책임자가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해당 직원을 작업 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먼저

취하여야 한다.

제27조 (직원의 작업 중지)

1. 직원은 산업 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보고 체계에 따라 직위자에게 보고하고, 부서장 등 직위자는 안전·보건관리 등의 제반 사항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회사는 급박한 위험으로 작업을 중지한 직원에 대하여 이를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도 주어서는 안 된다.

제28조 (안전 보건 점검)

1. 관리감독자 또는 주관부서는 직원의 안전 보건 확보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안전 보건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안전 보건 점검의 점검 횟수는 작업장 전반에 대한 안전 보건 상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3. 관리감독자는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안정한 상태 및 위험 요소를 조기에 발견하고 시정, 개선 조치하여야 한다.

제29조 (기계·기구 등의 방호 조치)

회사는 유해·위험 기계·기구의 유해·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 대여, 설치, 사용하거나, 양도·대여를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아니 되며, 방호 조치가 필요한 기계·기구를 사용·관리하는 관리감독자는 다음 각호의 방호 조치를 추가로 하여야 한다.

- (1) 작동 부분의 돌기 부분은 문힘형으로 하거나 덮개를 부착할 것
- (2) 동력전달부분 및 속도조절 부분에는 덮개를 부착하거나 방호망을 설치할 것
- (3) 회전기계의 물림점, 끼임점에는 덮개 또는 울 등의 방호장치를 설치할 것

제30조 (안전검사)

1. 회사는 유해·위험한 기계·기구 및 설비를 사용하는 경우 유해·위험 기계 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은 후 사용해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검사 프로그램을 정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아 그에 따라 유해·위험 기계 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 검사를 하면 안전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3. 제2항의 검사 프로그램의 인정을 받지 아니하거나 인정이 취소된 유해·위험 기계 등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4. 회사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유해·위험한 기계·기구 및 설치 등에 대하여 방호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안전 인증 기준 또는 자율 안전 기준, 안전 검사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기계·기구·설비 및 방호 장치·보호구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31조 (안전 보건 표시)

1. 관리감독자는 작업장의 유해·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서 안전 의식 고취를 위하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고, 지시, 안내, 금지 등의 안전 보건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2. 관리감독자는 안전 보건 표지를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3. 직원은 안전 보건 표지의 표시 내용 및 위험 사항 등을 미리 인지하고 해당 지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2조 (안전 보건 보호구)

1. 회사는 유해·위험 작업 시 작업 환경과 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작업하는 직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며, 보호구 지급에 대한 세부 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 모든 직원은 작업 환경과 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착용할 권리와 의무가 있으며, 제공받거나 착용 지시를 받은 직원은 그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3. 회사는 안전 보호구를 지급하는 경우 상시 점검하여 이상이 있는 것은 수리하거나 다른 것으로 교체하는 등 항상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직원이 청결을 유지하는 안전화, 안전모, 보안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회사는 방진 마스크의 필터 등을 언제나 교환할 수 있도록 충분한 양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5. 회사는 보호구를 공동 사용하여 직원에게 질병이 감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인 전용 보호구를 지급하고 질병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3조 (물질 안전 보건 자료의 게시 및 교육)

1.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화학 물질 또는 이를 함유한 혼합물(이하 ‘대상 물질’)을 양도 받거나 제공받는 부서장(이하 ‘취급 부서장’)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작성된 자료(이하 ‘물질안전보건자료’라 한다)를 제공받아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취급 부서장은 제공받은 물질 안전 보건 자료를 작업장 내 취급 직원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3. 제1항에 따른 취급 부서장은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담은 용기 및 포장에 경고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용기에 이미 경고 표시가 되어 있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4. 제1항에 따른 취급 부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취급 직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받은 직원에 대해서는 해당 교육 시간만큼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 보건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 (1) 물질 안전 보건 자료 대상 물질을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작업에 직원을 배치하게 된 경우
- (2) 새로운 물질 안전 보건 자료 대상 물질이 도입된 경우
- (3) 유해성·위험성 정보가 변경된 경우

5. 취급 부서장은 대상 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작업 공정별로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

- (1) 물질의 명칭
- (2)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 물리적 위험성
- (3) 안전 및 보건상의 취급 주의 사항
- (4) 적절한 보호구
- (5) 응급 조치 요령 및 사고 시 대처 방법

6. 제5항에 따른 작업 공정별 관리 요령은 유해성·위험성이 유사한 대상 물질의 그룹별로 작성하여 게시할 수 있다.

제34조 (작업 환경 측정)

1. 회사는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하는 작업장으로서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작업장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작업 환경 측정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에서 관계 수급인 또는 관계 수급인의 직원이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작업 환경 측정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작업 환경 측정을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켜야 하며, 각호 외에 유해 인자별 세부 측정 방법 등은 관계법령에 따른다.

- (1) 작업 환경 측정 전에 예비 조사를 할 것
- (2) 작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 작업시간과 유해 인자에 대한 작업자의 노출 정도를 정확히 평가할 수 있을 때 실시할 것
- (3) 모든 측정은 개인 시료 채취 방법으로 하되, 개인 시료 채취 방법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역 시료 채취 방법으로 실시할 것

4. 회사는 작업 환경 측정 결과를 다음 각호 어느 하나의 방법(전자적 방법을 포함)으로 해당 직원에게 알려야하며, 근로자 대표가 작업 환경 측정 결과나 평가 내용의 통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1) 사업장 내의 게시판에 부착하는 방법

(2) 사보에 게재하는 방법

(3) 해당 직원들이 작업 환경측 정 결과를 알 수 있는 방법

5. 작업 환경 측정 기관이 작업 환경 측정을 한 경우에는 시료 채취를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작업 환경 측정 결과표를 전자적 방법으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6. 회사는 작업 환경 측정 결과를 기록한 서류를 관계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제35조 (건강 진단)

1. 회사는 재직중인 임직원에 대하여는 매년 정기적으로 건강 진단(특수 검진 포함)을 실시한다.

2. 회사는 건강 진단 기관으로 하여금 관계 법령에 따라 건강진단 결과를 임직원 및 회사에게 통보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질병의 확진이 곤란한 검진 대상자는 즉시 회사에게 통보하여 제2차 건강 진단을 받도록 한다.

3. 회사는 건강 진단 결과 임직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사의 관리 소견에 따라 건강 진단 결과표를 송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근무 부서 변경, 작업의 전환, 근로 시간의 단축 및 근무 중 치료, 안정 등의 조치를 취한다. 사후관리 조치 결과는 지방 고용 노동 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회사는 건강진단 결과를 임직원의 건강보호 및 유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5. 임직원은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을 정당한 사유 없이 고의로 거부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회사가 지정한 건강진단 기관이 아닌 기관에서 건강진단을 받고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35조의 2 (직무 스트레스에 의한 건강 장애 예방 조치)

회사는 근로자가 장시간 근로, 야간 작업을 포함한 교대 작업, 차량 운전(전업(專業)으로 하는 경우만 해당) 등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이하 '직무스트레스'라 한다)이 높은 작업을 하는 경우에 직무 스트레스로 인한 건강 장애 예방을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6조 (질병자 근로금지 등)

1. 회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직원을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1) 전염의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 자. 다만, 전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조현병, 마비성 치매 등 정신 질환에 걸린 자

(3) 심장, 신장, 폐 등의 질환이 있는 자로서 근로에 의하여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자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질병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질병에 걸린 자

2.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근로가 금지되거나 제한된 근로자가 건강을 회복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7조 (근골격계 질환 예방관리)

1. 회사는 직원이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 및 유해요인조사 방법에 관한고시”에서 정한 근골격계 부담 작업을 하는 경우에 3년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유해 요인 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신설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신설일부터 1년 이내에 최초의 유해 요인 조사를 하여야 한다.

(1) 설비·작업공정·작업량·작업속도 등 작업장 상황

(2) 작업시간·작업자세·작업방법 등 작업 조건

(3) 작업과 관련된 근골격계 질환 징후와 증상 유무 등

2. 회사는 유해 요인 조사 결과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인간공학적으로 설계된 보조 설비 및 편의 설비를 설치하는 등 작업 환경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직원은 근골격계 부담 작업으로 인하여 운동 범위의 축소, 쥐는 힘의 저하, 기능의 손실 등의 징후가 나타나는 경우 그 사실을 공단에 통지할 수 있으며, 공단은 해당 직원에 대하여 의학적 조치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작업 환경 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8조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 장애 예방 조치)

1. 회사는 주로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고객응대근로자에 대하여 고객의 폭언, 폭행, 무리한 요구,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이하 이 조에서 폭언 등이라 한다.)로 인한 건강 장애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회사는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 제3자의 폭언 등으로 근로자에게 건강 장애가 발생하거

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표준 매뉴얼에서 정한 업무의 일시적 중단(업무 중지권), 재량권 부여 및 고충 처리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근로자는 회사에게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해당 직원의 요구를 이유로 공단은 해고 또는 그 밖의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39조 (보건 시설)

회사는 직원의 건강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보건 시설을 지정할 수 있다.

제40조 (비밀 누설의 금지)

보건관리자 및 보건 관리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직원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6장 위험성 평가

제41조 (위험성 평가 계획 수립)

1. 회사는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위험성 평가의 목적, 평가 방법, 평가 대상(또는 범위)별 역할, 주지 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제42조 (위험성 평가 실시)

1. 관리감독자는 사업장의 공정과 작업 내용에 적합한 위험성 평가 방법을 선정하여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각각 요인에 대한 위험성을 추정·결정한 후 위험성 감소 대책을 수립, 실행하는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위험성 평가 시 산업 안전 보건 전문가 또는 전문 기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3. 위험성 평가 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장의 직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4. 위험성 평가 실행 결과 남아 있는 유해·위험요인에 대해서는 게시, 주지 등의 방법으로 직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43조 (위험성 평가 주기)

1. 위험성 평가 주기는 최초 평가, 수시 평가, 정기 평가로 구분한다. 이 경우 최초 평가 및 정기 평가는 전체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2. 정기 평가는 최초 평가 후 매년 정기적으로 다음 각호에 사항을 고려하여 실시한다.
 - (1) 기계·기구, 설비 등의 기간 경과에 의한 성능 저하
 - (2) 근로자의 교체 등에 수반하는 안전·보건과 관련되는 지식 또는 경험의 변화
 - (3) 안전·보건과 관련되는 새로운 지식의 습득
 - (4) 현재 수립되어 있는 위험성 감소 대책의 유효성 등
3. 수시 평가는 다음 각호의 계획 착수 전에 실시한다. 다만, 제5호의 경우 재해 발생 작업을 대상으로 작업을 재개하기 전에 평가한다.
 - (1)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 (2)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 (3)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주기적·반복적 작업으로서 정기 평가를 실시한 경우 제외)
 - (4) 작업 방법 또는 작업 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 (5) 중대 산업 사고 및 산업 재해(휴업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발생
 - (6) 그 밖에 관리책임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제44조 (위험성 평가 절차)

위험성 평가를 다음의 절차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 가. 평가 대상의 선정 등 사전준비
- 나. 작업과 관계되는 유해 위험 요인의 파악
- 다. 파악된 유해 위험 요인별 위험성의 추정
- 라. 추정한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위험성인지 여부의 결정
- 마. 위험성 감소 대책의 수립 및 실행
- 바. 위험성 평가 실시 내용 및 결과에 관한 기록

제7장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

제45조 (사고 발생 시 처리 절차)

1. 회사는 사고 발생 시 적극적으로 사고 확대 방지와 재해자 응급 구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2.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발견자가 긴급 조치를 우선적으로 하고, 보고 체계에 따라서 보고하여야 한다.
3. 소관부서장은 사고 발생 현장을 사고 조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원형대로 보존되어야 한다. 중대 재해의 경우는 관계 행정 기관의 조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변형하거나 훼손하여서는 안 된다.
4. 사고조사 시 근로자대표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근로자대표가 정한 사람을 입회시켜야 한다.
5. 사고 발생 시 긴급 조치,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6. 회사는 사고 대책 본부나 사고 조사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운영할 수 있다.
7. 회사는 사고 조사가 마무리된 경우 재해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조속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제46조 (긴급 조치)

사고로 인한 피해의 확대 방지를 위하여 사고가 발생한 부서의 관리감독자는 다음과 같이 긴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 가. 연쇄 사고 및 사고 확대 방지를 위한 안전 조치
- 나. 부상자의 응급 조치 및 후송
- 다. 사고 원인의 신속 규명 및 복구 대책 강구
- 라. 기타 사고 처리에 필요한 행동

제47조 (사고 원인 조사 및 대책 수립)

1. 회사는 중대 재해 등의 사고 발생 시에 주관부서장 주도하에 중립적인 자세로 사고 발생 사유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발굴하고 대책을 수립하여 동종 사고 재발 방지 및 사고 예방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대 재해인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보고 및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2. 주관부서장은 사고 발생 원인과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해당 부서에 개선 대책, 추진 일정 등을 포함한 개선 요구를 요청하여야 하며, 해당 소관부서장은 모든 일에 우선하여 개선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주관부서장은 사고에 대한 개선 일정에 따른 개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4. 회사는 중대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1) 발생 개요 및 피해 상황
 - (2) 조치 및 전망
 - (3) 기타 중요한 사항
5. 회사는 사내 게시판, 홍보물 등을 통하여 사고사례, 동종 재해 예방 대책 및 개선내용 등을 공지할 수 있다.

제48조 (재해 발생 현황 분석 및 종합 대책 수립)

1. 주관부서 또는 소관부서는 정기적으로 재해 발생 현황을 총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대표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에 협조한다.
2. 회사는 산업 재해 등 안전 사고의 원인 조사, 분석 등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별도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담당부서장은 시스템 운영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49조 (산업 재해 발생 보고)

1. 소관부서장은 해당 소속 직원이 업무에 관계되는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에 지체없이 관계 법령에 따라 산업재해조사표 또는 사고보고서를 작성하여 주관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주관부서장은 산업 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3. 회사는 산업 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재해 발생 원인 등을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하고, 동종 및 유사 재해의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장 자율 안전 활동

제50조 (자율 안전 활동)

1. 회사는 모든 직원으로 하여금 안전 보건 관리 업무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자발적인 흥

- 미를 가지도록 자율 안전 활동을 실시하여 안전 보건 의식의 함양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2. 회사는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해 무재해 운동 등을 실시할 수 있다.
 3. 모든 작업자는 작업 전에 일상 안전 점검 및 작업 후 정리 정돈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51조 (안전 제안 제도 등)

회사는 제50조에 따른 안전 관련 개선 과제 제안을 위한 안전 제안 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제52조 (안전 순찰)

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는 수시로 사업장을 안전 순찰을 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불안정한 행동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당해 근로자에게 시정 지시하여야 한다.

제9장 상벌 및 기타

제53조 (포상)

1. 회사는 안전 보건 관리 실적이 우수한 부서 또는 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사 규정 등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 (1) 산업 재해 예방 활동에 공적이 현저한 경우
 - (2) 안전 목표 달성 실적이 우수한 경우
 - (3) 연간 안전 보건 경영 활동이 우수한 경우
 - (4) 기타 회사의 안전 보건 관리 업무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경우
2. 포상 대상자, 포상 기준 및 포상 절차 등은 회사의 관계 규정 및 방침을 따른다.

제54조 (징계)

1.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직원은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 조치할 수 있다.
 - (1)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명령이나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위반한 자
 - (2) 정당한 사유없이 안전·보건관리상의 지시 및 명령을 위반하거나 불복한 자
 - (3) 각종 재해 및 사고의 은폐, 허위 보고, 태만으로 안전사고 사후 처리를 지연시킨 자

(4) 기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고를 초래한 자

2. 징계의 종류 및 절차는 인사 규정에 따른다.

제55조 (변경 절차)

1. 회사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장의 규모나 특성에 적합하도록 변경할 수 있으며, 법령의 최신 제·개정 내용을 확인하여 안전 보건 관리 규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안전 보건 관리 규정을 작성·변경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며 사내 게시판 및 사무실 등에 게시하거나 갖춰 두고 직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56조 (문서 기록 보존)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한 모든 기록의 보존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필요에 따라서는 보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7조 (준수)

1. 회사의 모든 임직원 및 사내 도급업체 근로자는 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본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에 안전 보건 관리상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노사협의회 및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정한다.

3.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해 별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안전 보건 관리(방사선, 전기, 고압가스, 위험물, 건축물 등)는 법정 선임자 및 그 소속부서에 제반 사항을 위임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58조 (그 밖의 사항)

사업장의 규모·업종 등에 적합하게 작성하며,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거나 그 사업장에 관련되지 않은 사항은 제외할 수 있다.

제10장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